

연구논문

검·경조직의 수사권 비교 분석:
한국과 미국의 수사권을 중심으로

양 승 일*
김 한 창**

- I. 서론
- II. 이론적 고찰
- III. 한국과 미국의 수사권 비교 분석
- IV. 결론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대륙형 수사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영미형 수사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비교 분석하여, 이들 국가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점을 조망하고자 한다. 검·경조직의 수사권을 한국과 미국으로 대별하여 정보보고 지휘권, 검시 지휘권 등 수사개시권과 구속영장 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긴급체포 지휘권, 구속 지휘권, 경찰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지휘권, 압수·수색·검증 지휘권, 기소중지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 수사진행권, 그리고 사건송치 지휘권, 송치 후의 수사지휘권 등 수사종결권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검·경간의 조직관계가 수직적이고 검찰의 수사관여 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를 주도하는 검사 주도형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검·경간의 조직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나타났으며, 검찰의 수사관여 수준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 주도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수사권은 검찰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일정부분은 변경 또는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검찰, 경찰, 수사권, 한국, 미국]

I. 서론

국민의 정부 이후 잠재해 있던 검·경간 수사권독립갈등이 참여정부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수사권 갈등은 기존의 제도 밖의 갈등이 아니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조사관, 장안대 겸임교수(ysivd@seoul.go.kr).

** 전주대학교 객원교수(click007@korea.ac.kr).

라, 2004년 9월에 설립된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회 발족과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 실현 약속을 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권은 수사개시권, 진행권, 그리고 종결권 등 모든 부문에서 검찰이 독점을 하고 있는 대륙형의 행태를 띠고 있으나, 경찰 등의 견제와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독점이 분권으로 지향하는 과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유형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사권에 대한 유형은 영미형, 대륙형, 그리고 절충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영미형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이고 검찰은 기소의 주체로서 검·경이 서로 대등협력관계로서, 영국과 미국이 이에 해당된다. 대륙형은 우리나라와 같이 검사가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라고 할 수 있는 상명하복의 관계를 말하는데 프랑스와 독일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절충형은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은 보완적인 2차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으로서 양 기관이 협력하는 관계로서, 일본²⁾ 등이 이에 해당된다(경찰청,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륙형 수사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영미형 수사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비교 분석하여, 이들 국가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점을 심도 있게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수사권에 대한 보완방향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수사권의 개념

수사권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범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범인, 증거 등을 찾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

2) 일본의 경우, 범죄의 수사는 경찰이 책임지고 있다. 검찰관은 최종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의 공판유지를 위해 증거를 확보 하는 업무가 일반적인 일이다. 그러나 검찰관의 수사권 행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의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검찰청법 제6조의 "검찰관은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 사할 수 있다.

나, 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 유무를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이 수사권인 것이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주도하고, 영국·미국·오스트레일리아 등 영미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주도한다. 즉 수사권의 주체가 대륙법 계통에서는 검찰, 영미법 계통에서는 경찰에 집중되어 있듯이, 수사권의 주체는 대개 경찰과 검찰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형사소송법 제195~197조)으로 규정하여 수사권의 주재자를 검찰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검사가 기소권 뿐만 아니라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그리고 수사종결권 등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수사를 책임지고 있다(김충남, 2001).

본 연구에서는 수사개시권, 수사진행권, 그리고 수사종결권 등을 활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수사권을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기준은 수사개시권의 경우, 정보보고 지휘권, 검시지휘권 등이며, 수사진행권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긴급체포 지휘권, 구속 지휘권, 경찰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지휘권, 압수·수색·검증 지휘권, 기소중지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으로 한다. 그리고 수사종결권의 경우는 사건송치 지휘권, 송치 후의 수사지휘권 등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모든 부문을 포괄한다.

2. 수사권의 유형화

검·경 수사권에 있어서 영미형은 검·경 조직관계가 상호보완적 관계이고 검찰의 수사관여가 최소화되어 있는 구조인 반면, 대륙형인 한국의 경우 검·경 조직관계가 일방적 관계이고 검찰의 수사 관여는 최대화되어 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유형화하면 <표 1>과 같다.

즉 검·경 조직관계가 수평적 관계이면서 검찰의 수사관여가 낮은 수준인 경우 경찰주도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인 경우는 검·경 협동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검·경 관계가 수직적 관계이면서 검찰의 수사관여가 낮은 수준인 경우 검찰지원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인 경우는 검찰주도형으

로 정의할 수 있다.

〈표 1〉 검·경 수사권의 유형

구 분		검찰의 수사관여 수준	
		낮은 수준	높은 수준
검·경 조직 관계	수평적 관계	경찰 주도형	검경 협동형
	수직적 관계	검찰 지원형	검찰 주도형

자료: 기존의 여러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

본 연구에서 경찰주도형은 수사권을 경찰이 주도하는 유형을 의미하며, 검찰 주도형은 검찰이 수사권을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 지원형은 검·경 관계가 상명하복의 수직적 관계이기는 하지만 검찰의 수사관여를 최소화하여 경찰에게 재량권을 최대도 부여하는 유형을 의미하며, 검·경 협동형은 검·경 관계가 동등한 수준이면서 검찰의 수사권한 비중이 높은 유형으로서 1차 수사주체는 검찰, 2차 수사주체는 경찰로서 상호 협동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Ⅲ. 한국과 미국의 수사권 비교 분석

1. 경찰과 검찰의 조직관계

1) 한국의 검·경 조직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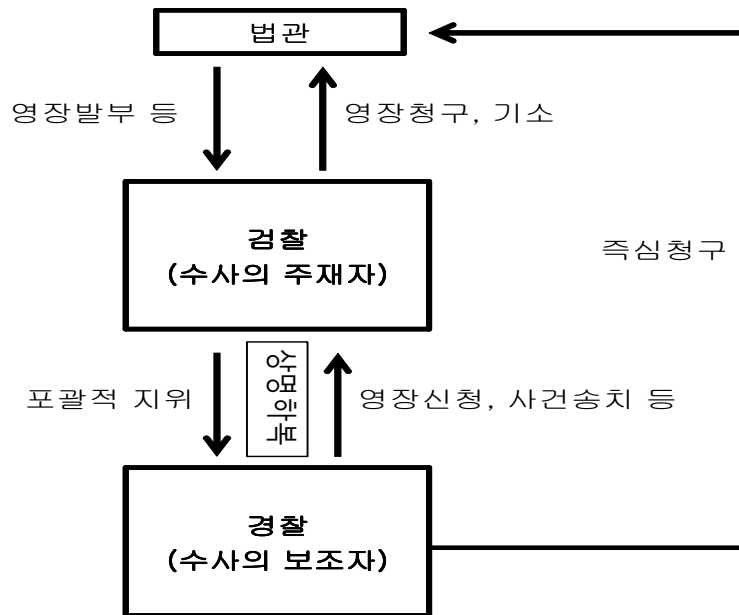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조직관계는 수직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고,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가 되는 것이다. 경찰이 검찰에게 영장신청, 사건송치 등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포괄적 지위를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검찰은 법원에 영장청구 및 기소 등을 하게 된다. 공식적으로도 경찰은 차관조직이며, 검찰은 장관급 조직이다.

물론 경찰이 법원에 직접적으로 즉심을 청구할 권한³⁾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3) 즉심, 즉 즉결심판의 청구는 관할 경찰서장이 서면으로 하게 되는데, 검사의 기소독점에 대한 예외조항이다. 즉심은 기일을 지정하여 심판하되 심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야 하며, 그 장소는 경찰서 내에 한한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림 1>에서 보듯이, 한국의 검·경 조직관계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한국의 검·경 조직관계



자료: (경찰청, 2005)를 근거로 재구성.

2) 미국의 검·경 조직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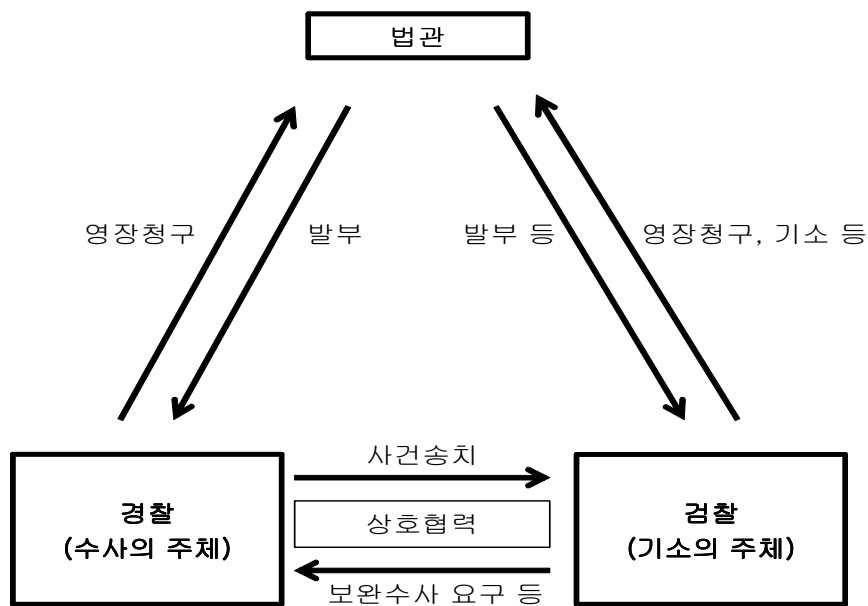
미국에서는 연방의 법무부가 우리나라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역할을 담당하며,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경찰이 범죄수사의 권한을 가지며, 검사는 조직범죄와 같은 일부 특수한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송치사건에 대한 기소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만 담당한다.

따라서, 미국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이

예외적으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즉결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이 대부분이다(법제처<<http://www.moleg.go.kr>>).

수사의 주체가 되고, 검찰은 기소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송치를 하게 되면,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 협조요구를 하게 되지만, 검·경 기관이 모두 법원에 영장청구를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도 주정부 이하의 경찰과 검찰조직은 동등한 수준⁴⁾이며, <그림 2>에서 보듯이, 조직적으로 상호협력의 수평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미국의 검·경 조직관계



자료: (경찰청, 2005)을 근거로 재구성.

2. 검찰의 수사관여 정도

검찰의 수사관여 정도는 수사를 시작하는 권한인 수사개시권, 수사를 진행시키는 권한인 수사진행권, 그리고 수사를 종결하는 권한인 수사종결권으로 대별할 수 있다.⁵⁾

4) 미국 연방경찰과 검찰조직은 법무부 산하의 FBI와 검찰청으로 대별되는데, FBI는 연방수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경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법무부 산하에 있다는 점에서 검찰조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조직개념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1) 한국검찰의 수사관여 정도

(1) 수사개시권

수사개시권은 수사를 시작하는 권한으로서, 수사의 개시에 관해서는 경찰법(제3조)⁶⁾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⁷⁾상 경찰의 임무와 범위에 수사를 규정하고 있어 경찰도 수사개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사 관련 법령, 즉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⁸⁾,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⁹⁾ 등에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며, 모든 수사에 있어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에 있어서 수사개시권은 검찰에 독점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수사개시권과 관련 있는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11조(수사사무보고)¹⁰⁾, 제12조(정보보고)¹¹⁾, 그리고 제33조(변사자의 검사)¹²⁾ 등에서는 내란·외환

5) 3가지 권한의 세부권한은 한국의 헌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등을 분석하여 관련 있는 항목을 선별했다.

6)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법제처 <<http://www.moleg.go.kr>>).

7)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법제처 <<http://www.moleg.go.kr>>).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이하 생략

8)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법제처 <<http://www.moleg.go.kr>>).

9)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법제처 <<http://www.moleg.go.kr>>).

10)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11조(수사사무보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하에서는 아직 범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태를 보고하여야 한다(법제처 <<http://www.moleg.go.kr>>).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이하 생략

11)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12조(정보보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경찰조치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제처 <<http://www.moleg.go.kr>>).

1. 소요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을 때

2. 정당, 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 질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 죄, 사회적 불안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경찰이 반드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찰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가 있을 때에도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결국 한국에 있어서 수사개시는 이들 법규를 근거로 검찰이 결정하며, 수사개시권은 검찰에 독점되어 있는 것이다.

(2) 수사진행권

수사진행권은 수사실행에 있어서의 권한으로서, 한국의 경찰은 수사실행과정에 있어서 권한이 거의 없고, 검찰에 상명하복하는 지휘복종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수사진행권과 관련된 법규에는 헌법 제12조 제3항¹³⁾, 형사소송법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¹⁴⁾, 제200조의 3(긴급체포)¹⁵⁾, 제201조(구속)¹⁶⁾, 제210조(사법경찰관리

12)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33조 (변사자의 검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가 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의 명령을 받아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법제처 <<http://www.moleg.go.kr>>).

13) 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법제처 <<http://www.moleg.go.kr>>).

14) 형사소송법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법제처 <<http://www.moleg.go.kr>>).

15)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법제처 <<http://www.moleg.go.kr>>).

16)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

의 관할구역외의 수사)¹⁷⁾,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¹⁸⁾,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23조(영장의 집행)¹⁹⁾, 그리고 제60조(기소중지·참고인 중지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²⁰⁾ 등인데, 이들 법규에는 거의 수사의 진행자체가 검찰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수사진행에 있어서 핵심인 영장청구권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검사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개정만으로는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속영장의 집행, 긴급체포, 구속, 관할구역 외의 수사, 압수·수색·검증, 그리고 기소중지에 대한 수사 등을 규정한 여타 법규에 있어서도 모두 검사의 승인을 근거로 경찰은 수사보조를 담당하게 되어 있어서 한국은 수사진행권도 검찰에 독점되어 있는 상황이다.

(3) 수사종결권

수사종결권은 수사를 끝내고 법원에 재판을 요구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으로서, 수사의 종결과 관련하여 경찰은 모든 사건의 종결시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찰은 이른바 불기소가 명백한 '혐의 없음', '죄안됨', '공소권 없음'의 사건도 자체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수사종결권과 관련된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54조(사건송치)²¹⁾와 제

사의 청구로 관할지방 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법제처 <<http://www.moleg.go.kr>>).

17) 형사소송법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제처<<http://www.moleg.go.kr>>).

18)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법제처 <<http://www.moleg.go.kr>>).

19)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23조 (영장의 집행) ③ 영장은 검사의 서명·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이를 집행한다(법제처<<http://www.moleg.go.kr>>).

20) 제60조 (기소중지·참고인 중지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피의자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제처<<http://www.moleg.go.kr>>).

21)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54조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59조(송치 후의 수사)²²⁾ 등에서는 경찰이 수사사건을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사건의 송치 후에 본 사건에 속하는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한국에서의 수사종결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결정하며, 수사종결권 역시 검찰에 독점되어 있는 것이다.

2) 미국검찰의 수사관여 정도

(1) 수사개시권

미국에 있어서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인 수사개시권은 경찰에도 독자적으로 주어져 있다. 긴박한 수사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개시권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수사개시권과 관련 있는 정보보고 지휘권, 검시 지휘권 등을 살펴볼 때도 검찰에는 이러한 권한이 없으며, 경찰의 자체판단으로 수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자체적으로 변사체를 검시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으며, 이를 근거로 경찰이 수사개시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미국에 있어 검찰의 수사개시권은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2) 수사진행권

미국에 있어서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진행 주도 권한인 수사진행권은 경찰에게 거의 전적으로 주어져 있다.

수사진행권과 관련 있는 구속영장 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긴급체포 지휘권, 구속 지휘권, 경찰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지휘권, 압수·수색·검증 지휘권, 기소중지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을 살펴볼 때, 구속영장 청구권은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독자적으로 주어져 있으며, 그 밖의 지휘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경찰이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법제처<<http://www.moleg.go.kr>>).

22)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59조 (송치후의 수사 등) ① 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수사를 속행하려 할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사건의 송치 후에 당해사건에 속하는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법제처<<http://www.moleg.go.kr>>).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미국에 있어 검찰의 수사진행권도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3) 수사종결권

미국에 있어서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종결 주도 권한인 수사종결권 역시 경찰에게 전적으로 주어져 있다.

수사종결권과 관련 있는 사건송치 지휘권, 송치 후의 수사지휘권 등을 살펴볼 때, 검찰에는 이러한 지휘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그리고 검찰로부터 송치 후의 보충수사를 요청받을 때에는 검찰의 지휘 없이 자체적으로 보충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즉 한국의 경찰은 검찰의 지휘 아래 사건을 송치하고 보충수사를 한 후 이를 근거로 검찰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지만, 미국의 경찰은 사건을 종결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보충수사 요청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미국에 있어 검찰의 수사종결권 역시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경찰청, 2005).

<표 2> 한국과 미국의 검찰 수사관여 정도 비교²³⁾

구분	수사개시권		수사진행권							수사종결권	
	A	B	C	D	E	F	G	H	I	J	K
한국	○	○	○	○	△	○	○	○	○	○	○
미국	×	×	△	×	×	×	×	×	×	×	×

주) ○는 수사권이 검찰에 높은 수준으로 독점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는 중간 수준, 그리고 ×는 낮은 수준을 의미함.

지금까지 수사권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관여 정도를 한국과 미국으로 대별하여 비교한 결과, 한국은 수사개시권과 관련되는 정보보고 지휘권, 검시권 지휘권 등은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 수사진행권과 관련 있는 구속영장 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긴급체포 지휘권, 구속 지휘권, 경찰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지휘권, 압수·수색·검증 지휘권, 기소중지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도 검찰에 집중되어

23) A는 정보보고 지휘권, B는 검시권 지휘권, C는 구속영장 청구권, D는 영장집행 지휘권, E는 긴급체포지휘권, F는 구속 지휘권, G는 경찰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지휘권, H는 압수·수색·검증지휘 권, I는 기소중지에 대한 수사지휘권, J는 사건송치 지휘권, 그리고 K는 송치 후의 수사지휘권을 의미한다.

있다.

단지 긴급체포의 경우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의 경우에 한하여 긴급체포가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검사의 사후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건종결권과 관련 있는 사건송치 지휘권, 송치 후의 수사지휘권 역시 검찰에 집중되어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 관여정도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IV. 결론

검·경조직의 수사권을 한국과 미국으로 대별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검·경간의 조직관계가 수직적이고 검찰의 수사관여 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를 주도하는 검사주도형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검·경간의 조직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나타났으며, 검찰의 수사관여 수준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주도형으로 나타나 있다(<표 3> 참조).

<표 3> 한국과 미국의 수사권 유형

구 분		검찰의 수사관여 수준	
		낮은 수준	높은 수준
검·경 조직 관계	수평적 관계	경찰주도형 ⇒ 미국	검경 협동형
	수직적 관계	검사 지원형	검사주도형 ⇒ 한국

이렇게 볼 때, 한국과 미국의 수사권 유형은 극과 극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에 100% 독점되어 있는 한국의 수사권 구조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은 보완적인 2차 수사기관이자 기소기관으로 양 조직이 대등협력할 수 있는 수사권 구조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수사권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로서, 이에 전면적으로 수사권 유형을 시도하는 논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모든 유형을 조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추후에는, 각국의 검·경 조직간에 수사권의 사례와 유형

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광웅. (1984).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서울: 박영사.
- 김충남. (2001). 「경찰학개론」. 서울: 박영사.
- 경찰청. (2005).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방향」, 경찰청.
- 장동운. (1986). 「조직관리의 모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학중. (1985). 「조직행동」. 서울: 세경사.
- 신배식·소병철 역. (1985). 「미국검찰, 연원과 발전」. 서울지방검찰청.
- Alschuler, A. (1968). "Prosecutor's Role in Plea Bargaining". Law Review 50.
- American Bar Association, (1971). Standards Relating Function and Defense Function.
New York : Institute of Judicial Administration.
- Easton, .D. (1977).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ipley, R. B. & Franklin, G. A. (1986). Policy Implementation and Bureaucracy. Chicago:
The dorsey Press, 2nd ed.
- 대검찰청<<http://www.sppo.go.kr>>
- 대법원<<http://www.scourt.go.kr>>
- 법제처<<http://www.moleg.go.kr>>
-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